

Korean Tax Update

June 2017, Issue 36

[조세뉴스]

한-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 체결 [전문보기]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이상을 관세국제조세정책관)는 6.22 일 네덜란드(노르트베이크)에서 「한국 - 미국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일 다음 날인 6.23(금)부터 발효됨.

-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 본사가 국가별 사업활동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 본사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국가간 교환됨.
- 우리나라는 '16.6 월 OECD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한 바 있으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에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해 양자간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음.
-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국가별보고서를 '18 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되며, 한국과 미국 간의 정기적인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사업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전문보기]

정부(정부대표: 윤종원 주 OECD 한국 대표부 대사)는 6.7(수) 파리 OECD 에서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함.

- 동 협약은 '15.11 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BEPS 대응방안 중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됨.
- 금번에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 개국이 서명하게되면 이들 국가간의 조세조약은 별도의 양자 조세조약 개정협상 없이 동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됨.
- 우리나라가 체결한 91 개 조세조약 중에서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약 45 개 수준이며 그 주요내용은,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 등임.
- 정부는 향후 동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그 효력은 2 단계에 걸쳐 최종 확정될 것임.

문재인정부 초대 국세청장, 29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29일 제22대 국세청장에 취임함.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신임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천명함.

- 1961년생, 경기 화성, 행시 33회
- 학력 : 고려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시건대 경영학 석사
- 주요 경력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예규·판례]

[판례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 두 6111 판결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 두 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이전 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2]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 두 13393 판결

-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게 주택분양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

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임.

[판례 3]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과세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 두 38149 판결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님.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영·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사업주체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 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 131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제 1 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함.

[판례 4] 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다음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 3 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 두 43554 판결

-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 105 조 제 1 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함.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 3 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 110 조 제 1 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에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심판례 1]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심 2017 중 1001, 2017. 6. 12.

- 구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철거, 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 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에 따른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심판례 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의제익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데 대하여 동 익금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조심 2017 지 0333, 2017. 6. 8.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의제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심판례 3] 신종자본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비용계상하다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5 서 4748, 2017. 6. 1.

- 신종자본증권이 K-IFRS의 도입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세법상 부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까지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하던 것을 그 거래의 실질이나 형식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K-IFRS의 적용으로 2011 사업연도부터 자본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 실질에 따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K-IFRS 적용 대상기업과 미 적용 대상 기업간에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세무상 인식이 다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4]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 및 행정지도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

조심 2017 지 0071, 2017. 5. 31.

-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고급객실의 요금을 인하하지 아니한 것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심판례 5] 물적분할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 조 제 5 항의 추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세 추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6 지 0855, 2017. 5. 11.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 조 제 5 항 제 2 호에서 그 사용일부터 2 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정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법인분할과 관련된 별도의 추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매각'이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인분할에 따른 자산의 승계를 매각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예규 1] 동일 사업연도에 2 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 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 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재법인-793, 2017. 6. 9

-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 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법인세법」 제 113 조 제 3 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 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 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예규 2]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재법인-787, 2017. 6. 8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24 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 40 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예규 3]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법인-737, 2017. 5. 3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 19 조제 2 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예규 4]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서면법령법인-2800, 2017. 5. 29

- 근로복지기본법 제 34 조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한 우리사주조합이 같은 법 제 43 조 제 1 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할 때 발생하는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예규 5]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사전법령법인-80, 2017. 5. 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 47 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 다목의 규정에 한정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
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7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